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858

2015. 12. 18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15. 11. 6. 이현찬 의원 발의(2015. 11. 11.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“무주택 세대주”를 “무주택 구성원”으로 함(안 제2조제2항다목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○ 다만,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“무주택 세대구성원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무주택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됨.

【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6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)

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(생 략)
2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
  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한국토지주택공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"지방공사"라 한다)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(이하 "공공매입임대주택"이라 한다)의 임차인은 **무주택 세대구성원**을 대상으로 선정하되,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   나. (생 략)

② (생 략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주거약자 등"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,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.	2. ----------.
가.~나. (생 략)	가.~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	다.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----------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